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주간 입법 동향

Vol. 104 (2023. 3. 6. ~ 3. 10.)

DR & AJU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주요 법안 동향

법안 종류	키워드	주요 법안	주요 내용
발의안	기업송무 인사/노무	① **기업의 연구개발활동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기업연구소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과 기업 연구개발 정책지원센터 지정, 기업연구소 지원사항 규정, 1981년 기업연구소 46곳이 정부로부터 첫 인증을 받은 날인 10월 24일을 기술개발인의 날로 지정하도록 함.
	기업금융	②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법 1조에 '은행의 공공성 확보'를 명시하도록 함.
국회 계류안	조세	③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상향 하도록 함.
공포 법령	기업송무	④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와 공사계약을 맺는 업체가 내야 하는 계약보증금률을 현행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인하하도록 함.
입법/행정예고	인사/노무	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들이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장기 휴가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1. 발의

*각 법률안 및 검토보고서 확인을 위해서는, 법률안 밑에 있는 링크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1	 김영식 (국민의힘)	기업의 연구개발활동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관리 및 지원하기 위해 1981년 최초 시행된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조직을 신고 · 인정함으로써 조세감면 · 연구인력지원 ·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자격 부여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기업 내 독립된 연구조직 육성을 통한 민간R&D 활성화 및 이에 따른 기술혁신 · 국가 기술경쟁력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임. 그러나 근거법령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은 기초연구 지원 및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조문이 혼재되어 있으며 법령 내에 관련 조항이 산재해 있어 규정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또한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대한 지원강화, 기술개발인 · 기업연구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기술개발인의 날 제정 등 민간 R&D 촉진을 요구하는 산업계의 목소리를 법제화하기 위한 기반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기업의 연구개발 조직 및 부서에 대한 규정을 기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분리하여 기업연구소의 정의, 육성계획, 관리 · 운영 규정,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과 기술개발인 사기진작 등의 내용을 담아 규정하고 이를 정부에서 수행하는 각종 기업혁신지원의 근거법률로서 제정하여 민간R&D 활성화의 초석을 다지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기업 등의 연구개발활동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업연구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연합뉴스 23.03.06. 김영식, 기업 R&D지원법 발의…"기술개발인의 날 지정" https://www.yna.co.kr/view/AKR20230306066900017?input=1195m	23.03.03. 제안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나. 기업연구소 설립이 가능한 기업 · 기관 · 단체를 명시하고,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함(안 제2조). 다. 국가는 기업연구소의 연구개발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 및 관리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하며, 기업연구소 육성을 위해 3년마다 기업연구소 육성계획을 수립 · 시행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5조). 라.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 인력 및 시설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조직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기업연구소가 소속된 기업등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바. 기업연구소의 연구개발활동 및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기술개발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24일을 기술개발인의 날로 지정하도록 함(안 제21조). 사. 기업연구소 인정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다른 기업 등의 내용을 복제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5조 및 제27조). 출처: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B2A3H0E2N1M7L1K0Q2P4O1W7T6S3S3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2	 김희곤 (국민의힘)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고령화 속도로 고령인구 구성비는 2025년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2035년에는 30%,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추계되고 있음. 그러나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해외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고령화 대비 정책과 제도가 미비하여 고용, 교육, 주거, 교통, 금융 등 사회 전반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임. 특히, 고령층은 디지털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오프라인 점포폐쇄 등 대면 금융거래 채널 축소로 금융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질병·요양 등으로 오프라인 점포조차 찾지 못해 불이익을 입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음. 최근에는 뇌경색으로 쓰려져 입원한 80대의 고령 환자가 병원비 지급을 위해 가족을 통해 정기예금을 찾고자 했으나, 병실 침대에 실려 은행에 방문하는 일까지 벌어져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과거 2013년 금융감독원은 예금주가 의식불명일 경우 금융회사가 병원비 범위 내에서 병원 계좌에 직접 이첩 처리하는 등 제한적인 방식으로 예금인출이 가능하도록 금융사들에게 협조 요청을 한 바 있으나, 현재 은행마다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효적인 제도로 자리잡고 있지 못한 실정임. 이에 예금자가 현저하게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식불명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직접 예금을 인출하기 곤란한 때에는 예금자의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가 은행에 예금의 인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은행은 진단서를 발급한 의료기관에 직접 이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요청에 응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금융사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도 최소한 병원비 지급은 가능할 수 있도록 금융서비스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0조의3 신설). 출처: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H2G3P0N2M2L8S1Q0W3S0S2A6Z9Y3X8	매경이코노미 23.03.04. 줄줄이 이어지는 정치권의 '은행 때리기' [국회 방청석] https://www.mk.co.kr/news/economy/10668283	23.03.03. 제안

2. 국회 계류안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3	정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도체 산업 등 국가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반도체 관련 시설 등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시 적용하는 기본공제율을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6에서 100분의 25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8에서 100분의 15로 상향하고, 한시적으로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신성장 · 원천기술 사업화시설이나 그 밖의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기업 규모에 따라 기본공제율을 각각 상향함과 함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추가공제율도 종전에는 투자 시설별로 100분의 3 또는 100분의 4이던 것을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100분의 10으로 상향하여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는 한편,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비우량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투자신탁 등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하고, 2022년 하반기에 이어 2023년 상반기에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시 적용하는 공제율을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80으로 한시적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출처: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ARC_N2Z3U0Q1F1B9Z1K4V0L8A0D5V8J8W0	한국경제 23.03.03. 與 "K칩스법 조속 통과 추진…첨단 패키징 5300억 투입"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303035388i	23.01.19. 제안 23.02.14. 상임위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23.02.14. 소위 상정/ 축조심사

3. 공포 법령

번호	소관부처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일자
4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계약제도에 대한 규제 개선 및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공사계약에 대한 계약보증금의 비율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10으로 하향 조정하고, 계약상대자가 성질상 분할 가능한 공사 · 물품 또는 용역 등에 관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인수 · 관리 · 사용하고 있는 기성 · 기납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제외하고 세입조치 하도록 하며,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 대표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이사장 또는 회장인 경우로서 해당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와 관련 없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출처: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33316,20230307)	서울경제 23.02.28. 지자체 공사계약 보증금률 낮춘다… "경기 침체 고려" https://www.sedaily.com/NewsView/29LXC5WE8D	23.03.07. 일부개정 23.03.07. 시행

4. 입법/행정 예고 법령

번호	소관부처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예고기간
5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의 근로시간 제도는 1953년 공장법 시대에 만들어진 체계가 70년간 유지되어 온 것으로 디지털 혁명, 일하는 방식과 생활 방식의 변화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서비스업의 확산, 디지털·정보기술의 발달, 개인 선호와 선택의 다양화되는 시대 변화에 맞춰 노사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확대하고 건강권·휴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 제도를 개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노·사 합의 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연장근로를 총량관리 할 수 있도록 추가 선택지를 부여하면서 연장근로 총량관리 도입 시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등 건강보호조치를 보편적으로 의무화(안 제53조 및 안 제53조의2) 나. 근로자대표의 선출 절차를 마련하고, 권한과 책무를 규정하는 등 근로자대표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근로자가 자신에 맞는 근로조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특정 직종, 직군 등에만 한정되는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안 제2조, 안 제8장의2 제92조의2부터 92조의8까지) 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확대하여(전업종 3개월, 연구개발 업무 6개월) 근로자가 근로일, 출퇴근 시간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율적인 결정권 강화(안 제52조) 라. 현행 보상휴가제를 연장근로시간 등을 적립하여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로 확대 개편(안 제57조) 마. 1일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휴게 면제 신청 시 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선택권 확대(안 제54조) 출처: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72318	매일경제 23.03.06. 주52시간제 대대적 개편…주69시간 일하고 장기휴가 가능해진다 https://www.mk.co.kr/news/economy/10668917	23.03.06. ~ 23.04.17.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기사

[중앙일보][기사] 중대재해법에도 늘어난 산재 사망…"처벌보다 예방 초점" (2023.03.07.)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45181

주요내용 정부가 중대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평가' 제도를 오는 2025년까지 전 사업장에 의무화하기로 함. 노사가 사전에 사업장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게 골자이며, 지난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됐음에도 오히려 산재 사고 사망자가 늘어나는 등 법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처벌'보다 '예방'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도임.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위 같은 내용을 담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고시 개정안을 7일부터 행정 예고한다고 밝힘.

[한국경제][기사] 산업안전상생재단, 중대재해 감축 위한 '원하청 상생 방안' 토론회 연다 (2023.03.03.)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303034349i

주요내용 현대자동차그룹 6개사(현대자동차,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의 출연으로 설립된 산업안전상생재단이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실과 함께 오는 6일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토론회'을 열음.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원하청 안전 상생 방안'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법조계, 학계, 민간재해예방기관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중소기업의 산재예방을 위한 정부 정책방향과 원·하청 안전 상생 방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임. 이번 토론회의 주요 의제는 △원·하청 안전 상생협력을 위한 주체별 역할 논의 △중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 및 지원 방향 논의 △산업안전보건계 소통강화 등임.

[세계일보][기사] 중대재해법에도…2022년 산재 사망 874명 (2023.03.02.)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302520258?OutUrl=naver

주요내용 지난해 산업재해로 유족급여가 승인된 사망자가 874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됨. 특히 퀵서비스와 같은 특수고용직의 증가세가 컸음. 작년 대비 46명 증가한 것. 노동자 1만명당 사고사망자를 나타내는 '사고 사망 만인율'은 0.43 퍼밀리아드로 전년과 같았음. 고용부는 "특고 종사자 등 산재보험 적용 범위 확대로 사고 사망자와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수가 함께 증가하면서 사고사망 만인율이 동일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함.

[서울경제][기사] 산재사망 1년새 46명 증가…중대재해법 실효성 있나 (2023.03.02.)

https://www.sedaily.com/NewsView/29MVCZ13FH

주요내용 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지난해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 사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사고 사망자는 874명으로 전년 대비 46명 증가했음. 특히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는 50억원 이상 건설업 사망자도 116명으로 전년 대비 3명 증가함. 건설업은 지난해 전체 사고 사망자의 46%(402명)에 달할 정도로 고위험 업종임.

중대재해법이 시행 1년을 넘겼지만 산업재해 사망자가 되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음. 당초 법이 실질적인 사고 예방보다는 기업들에 대한 형사처벌에만 주력한 나머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옴.

담당 변호사 및 전문인력

입법전략센터



차동언
파트너변호사

T : 02-3016-8720
E : decha@draju.com



박민재
공동센터장
파트너변호사

T : 02-3016-8717
E : parkmj@draju.com



최원혁
변호사

T : 02-3016-8737
E : whchoi@draju.com



권기원
공동센터장

T : 02-3016-8743
E : gwkwon@draju.com



이승철
고문

T : 02-3016-8706
E : sclee@draju.com

기업송무그룹



김수형
파트너변호사

T : 02-563-2900
E : shkim@draju.com

인사/노무팀



김보훈
파트너변호사

T : 02-3016-5206
E : bhkim@draju.com

기업금융그룹



김인진
파트너변호사

T : 02-3016-8761
E : kij@draju.com

조세그룹



이규철
대표변호사

T : 02-3016-5335
E : kclee@draju.com

중대재해자문그룹



김영규
파트너변호사

T : 02-3016-8723
E : ykkim2@draju.com